

## 『2023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3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1. 대회목적

- ☐ 스마트시티 보안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구팀을 선발하고, 후속연구를 지원('24년)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제시하는 경연 진행

#### ◆ [참고]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개요

- 국내 정보보호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신기술을 주제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구팀을 선발 후, 일부 우수 연구팀에 후속 R&D를 지원하는 챌린지 방식의 R&D 추진

### 2. 도전문제 및 추진방법

#### ☐ 도전문제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제시하라!

#### ☐ 추진방법

|         |                           |
|---------|---------------------------|
| 예선(9월초)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취약점 발굴 경연(온라인) |
| 본선(9월말) | 취약점 분석기술 경연 및 발표경연(오프라인)  |

※ 상세 문제 및 추진 방법은 [붙임 2] 문제정의서와 참가 접수 후 제공되는 추가 기술문서 참조

### 3.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

|             |                                                                                                                                                                                                                                                                                                                                                |
|-------------|------------------------------------------------------------------------------------------------------------------------------------------------------------------------------------------------------------------------------------------------------------------------------------------------------------------------------------------------|
| <b>근거법령</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li> <li>○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li> <li>○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li> <li>○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li> </ul> |
| <b>관련규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li> <li>○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li> <li>○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li> </ul>                                                                                                                                                                                                  |

### 4. 대회 진행방식

- ① **(예선대회)** 스마트시티에서 발생가능한 취약점 유형을 바탕으로 한 가상문제를 온라인 경연플랫폼을 통해 풀고 점수를 얻는 문제풀이 (Jeopardy) 방식의 경연
- ② **(본선대회)** 발표경연과 기술경연 2개 부문으로 진행
  - **발표경연** :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해결 아이디어 제시
  - **기술경연**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모사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시연하고, 온라인 경연플랫폼을 통해 문제풀이 진행
- \* 스마트시티 LiveHack : 경연용으로 구축된 스마트시티 모사 환경
- ③ **(후속연구)** 선발된 우수 연구팀 2개 팀을 대상으로, 대회 주제와 연관된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 5. 추진일정

| 1 참가신청 접수         | 2 설명회        | 3 예선대회          | 4 본선대회            |      |      |
|-------------------|--------------|-----------------|-------------------|------|------|
| 대회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br>사업설명회 | 온라인 경연          | 오프라인 경연           |      |      |
|                   |              |                 | 1일차               |      | 2일차  |
|                   |              |                 | 오전                | 오후   | 전일   |
|                   |              |                 | 발표경연              | 기술경연 | 기술경연 |
| 7.24(월) ~ 8.23(수) | 7.31(월) 15시  | 9.1(금) ~ 9.2(토) | 9.21(목) ~ 9.22(금) |      |      |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 우수 연구팀 특전

- 챌린지 대회에서 우수 연구팀으로 선발된 3개팀 중 상위 2개팀에게는 대회 주제 연관 분야의 후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지원 예정.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후속연구 수행이 제한됨

※ 소관사업 : 사이버보안챌린지선도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 총 10억원 이내 규모에서 상위 2개팀을 선발하여 후속연구비 차등 지원

※ '24년도 후속연구비는 정부 정책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7. 참가방법

### 가. 대회 참가 자격

- 본 챌린지에 관심 있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 가능

※ 후속연구는 공고문 內 8.후속연구 관련안내 참조

### 나. 신청방법

-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 접수

※ [붙임 3] 內 후속연구 참여의향서는 본선진출팀에 한해 추후 안내를 통해 제출

### 다. 신청요령

- (참가신청 접수) 2023. 7. 24.(월) 10:00 ~ 8. 23.(수) 15:00

- (접수처)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https://sec-challenge.kr>) 상단의 [접수하기] 메뉴

- (신청방법)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 접수

\*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가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유의사항) 참가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마.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구 분     | 내 용                                                                                                    |
|---------|--------------------------------------------------------------------------------------------------------|
| 일시 / 방법 | ○ 7. 31.(월) 15:00 / Youtube*를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br>* 채널 : Youtube 검색창에 [정통방통]으로 검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 youtube 채널) |
| 주요내용    | ○ 대회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사항<br>○ 출제의도 설명, 대회환경, 평가방법 등의 안내 및 질의응답                             |

##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 가. 주요사항

- 본 대회는 '24년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며, 최종 지원 대상의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후 최종확정 될 예정  
※ 단, 관련 법령 및 규정은 협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상위 3개팀에는 모두 상장이 수여되나, 상위 2개팀만 후속연구를 지원
- 본 대회결과 외 우대 및 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나. 후속연구 수행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후속연구 수행이 제한  
※ 대회 참가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후속연구 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경우는 본선대회 결과 발표시점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 후속 R&D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산학협력단·법인 등) 구성 필수  
※ 협약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im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 예정

- 대회 우수 연구팀이 후속연구를 포기하거나 대회결과 통보 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후속연구비 지급 예정

#### 공통사항

- 과제제안요구서(문제정의서)와 운영규정, 대회 부속서류의 경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후속연구 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수행 제한 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23년 12월 1일 기준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후속연구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24.1월~'24.12월(12개월)으로 '24년도 후속연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0억원 이내에서 2개 우수 연구팀에 차등 지급 예정
- \* 다만, 정부 정책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23년 한시적으로 지원 중인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24.1월 기준 적용기간 연장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변경 적용 가능

##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br>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br>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br>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 '23년 한시적으로 지원 중인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24.1월 기준 적용기간 연장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변경 적용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 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허용 여부의 경우 추후 후속연구 수행기관 대상 안내 예정
-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마.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포함

## 바.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름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 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2023년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인 경우,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한시 적용으로, '24.1월 기준 적용기간 연장 시 허용 가능

## 사.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 기술료 산정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 '마.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자.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함



## 차.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타. 협약 시 제출서류

|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 고                                      |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전자파일<br>(HWP) | 전산<br>등록<br>(IRIS) |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전자파일<br>(PDF)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br>작성 후 제출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br>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br>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
| 4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br>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필수)    |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br>작성 후 제출             |
| 5                                                                                                                                   | 사업자등록증(필수)                                   |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6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br>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               |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br>기업만 제출               |
| 7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br>기업만 제출               |
| <div>○ 협약 제출서류의 경우 추후 후속연구 수행기관 대상 별도 안내 예정</div> <div>○ 7번 제출서류 설명</div> <div>-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div> |                                              |               |                    |                                          |

※ 협약 제출서류 마감일의 경우 대회 후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9. 후속연구 유의사항

###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및 [별표 5] 참고)

#### < 다음의 경우는 후속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챌린지 대회 주제 관련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23년 12월 1일 기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23년 12월 1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23년 12월 1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3년 12월 1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상기 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나. 기타 유의사항

- 후속연구 협약용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 사용자 및 기관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10.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
| 대회 일반문의   | <input type="checkbox"/>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br>○ 운영사무국 : 02-6956-7957<br>○ 홈페이지 : <a href="https://sec-challenge.kr">https://sec-challenge.kr</a><br>○ 이메일 : <a href="mailto:czon@cmcom.kr">czon@cmcom.kr</a> |
| 대회 기술문의   | ○ 홈페이지 채널톡 문의하기 버튼 클릭                                                                                                                                                                                        |
| 후속연구 관련문의 |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이버보안팀<br>○ 전화 : 042-612-8334<br>○ 이메일 : <a href="mailto:chrish@iitp.kr">chrish@iitp.kr</a>                                                                         |